

의안번호	2209943
의 회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5. 6. 27.
추계번호	25A24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이어야 함 - <u>벤처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 추가</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벤처기업의 요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지원 대상 벤처기업을 확대하려는 취지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관련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 또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감면 대상자 또는 대상 법인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참고자료 2] 벤처기업 관련 조세감면 개요 및 실적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은 벤처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기업의 수에 기업당 재정 지원액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중견벤처기업의 수와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기준 매출액 수준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중견벤처기업의 수를 추계할 수 없음
 - － 중견벤처기업의 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중견기업이 되면서 벤처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의 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미협조로 해당 자료 활용 불가
 - 또한, 현행법¹⁾상 벤처기업이 되려면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정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서 생략)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이를 평가·인정받아야 하는데, 중견기업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법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를 중견기업의 경우에 준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모집단의 수와 기업 규모가 크게 달라 이를 활용하기 곤란

- *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는 804만 2,726개²⁾로 이 중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기업이 약 435만개

- *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른 2023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는 5,868개로 이 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618개,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126개

- * [참고자료 3] 매출액 구간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현황

- 중견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기업당 평균 지원 예산을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업력 및 기업의 성장 단계에 차이가 있어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재정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캐피탈선진화” 사업은 벤처기업 및 초기창업 회사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을 통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과 투자자 간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인데,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와 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창업 초기단계의 재정 지원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1]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조세수입) 감소액은 중견벤처기업 중 항목별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수에 기업당 평균 감면액을 곱하거나, 중견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할 법인 또는 사람의 수에 항목별 감면액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계할 수 있으나,

2)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재편·가공한 통계이며, 물리적 사업장 없는 기업과 비활동 기업(매출액=0 & 유급종사자=0) 등도 포함하여 다른 기업 통계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은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상술하였듯 중견벤처기업의 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규모 및 업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중견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당 평균 감면액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벤처기업 관련 조세감면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³⁾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견기업 평균업력은 22.8년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⁴⁾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처로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임을 고려할 때 기존 감면실적에 비해 대상자 수와 1인당 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실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이에 벤처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과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코드)	내역사업명	내용	2025년도 예산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일반회계, 5231-301)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 채용·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1,970
	벤처기업 인프라지원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지원하고 소셜벤처 육성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립	2,812
	여성벤처 활성화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벤처 활성화를 지원	1,500
	아기유니콘 육성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22,000
	소계		28,282
벤처캐피탈 선진화 (일반회계, 5231-302)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상담·IR 지원, 대학(원)생 대상 투자교육 및 국내외 투자경진대회 참가지원, CVC글로벌 역량강화 등 투자활성화 지원	702
	벤처투자 정보센터	벤처캐피탈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조직·인력·재무현황 등을 공시하고 벤처캐피탈시장 통계 및 동향 등 정보 제공	650
	펀드운용사 평가·검사	벤처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상태 및 운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펀드 운용사 준법성 검사	124
	M&A활성화 지원	창업-투자-회수-재투자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M&A희망 중소기업 상담·자문 및 매칭 지원과 거래정보망 운영	617
	지역엔젤투자 허브 운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불균형 완화 및 지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권 내 엔젤투자 거점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1,440
	소계		3,533
벤처투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화) (일반회계, 5231-307)	벤처투자 종합포털	여러 곳에 분산운영 중인 벤처투자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대국민 대상 종합 서비스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	373
	벤처투자펀드 운영정보시스템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이 결성·출자한 벤처투자펀드의 운용정보 관리 및 운용상황 출자자 보고 지원시스템을 구축	508
	소계		881
합계			32,6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벤처기업 관련 조세감면 개요 및 실적

연번	조세지출 내역	2023년 실적	
		대상자 수 (명,개)	금액 (억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도입목적: 창업기업의 생존 및 기반 확충 ■ 수혜자: 창업중소기업 등 ■ 수혜내용: 창업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 그후4년간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공통사항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은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창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은 3년 75%, 2년 50% < 20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은 50% < 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 > * 수도권외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창업은 100% * 위 경우를 제외한 수도권내 청년창업은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수도권외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은 25% ■ 적용기한: '27. 12. 31.	계 77,114 소득세 (64,639) 법인세 (12,475)	계 7,629 소득세 (4,841) 법인세 (2,788)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도입목적: 기업투자자의 조합출자 지속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수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수혜내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사 등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5. 12. 31.	계 19 법인세 (19)	계 205 법인세 (205)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도입목적: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지원 ■ 수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25. 12. 31.	계 606 법인세 (606)	계 652 법인세 (652)

연번	조세지출 내역	2023년 실적	
		대상자 수 (명,개)	금액 (억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 도입목적: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 수혜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등 방식으로 출자한 법인 ■ 수혜내용: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❶ 설립 자본금 납입, ❷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❸ 잉여금 자본전입, ❹ 채무의 자본전환 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5. 12. 31.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5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 확대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의 수익과 손실의 불균형 치유 ■ 수혜자: 투자자, 중소기업창업조합 등 ■ 수혜내용: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기한: '25. 12. 31.	계 145 소득세 (145)	계 23 소득세 (23)
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 활성화 ■ 수혜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수혜내용: '18.1.1.부터 '25.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25. 12. 31.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 수혜자: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 ■ 수혜내용: -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5천만원 초과 30%, 5천만원 이하~3천만원 초과 70%, 3천만원 이하 100%) ■ 적용기한: '27. 12. 31.	계 15,418 소득세 (15,418)	계 1,905 소득세 (1,905)

연번	조세지출 내역	2023년 실적	
		대상자 수 (명,개)	금액 (억원)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도입목적: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 수혜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 ■ 수혜내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 5억원 한도 ■ 적용기한: '24. 12. 31.	계 2,723 소득세 (2,723)	계 67 소득세 (67)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도입목적: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 수혜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 ■ 수혜내용: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5분의1, 5회) 가능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및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연간 행사가액 합계 3년간 5억원 이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신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양도소득세) 선택 가능 ■ 적용기한: '27. 12. 31.	계 565 소득세 (565)	계 8 소득세 (8)
1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 도입목적: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수혜자: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 ■ 수혜내용: 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7. 12. 31.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11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 도입목적: 벤처 재투자 활성화 ■ 수혜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창업주 또는 받기인 ■ 수혜내용: 양도대금의 50% 이상 재투자 시, 재투자자에 사용된 금액을 재투자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6. 12. 31.	계 2 소득세 (2)	계 15 소득세 (15)

연번	조세지출 내역	2023년 실적	
		대상자 수 (명,개)	금액 (억원)
1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도입목적: 벤처기업 성장 지원 ■ 수혜자: 벤처기업 창업주(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등기이사&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수혜내용: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 출자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없음	— * 2024년 신설	— * 2024년 신설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3] 매출액 구간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현황

매출액 구간별 중소기업 현황(2022년)

(단위: 개)

구분	기업 수
5천만원 이하	4,350,699
5천만원~1억원	1,030,207
1억원~5억원	1,731,067
5억원~10억원	414,802
10억원~50억원	403,927
50억원~100억원	61,978
100억원~500억원	45,766
500억원 초과	4,280
합계	8,042,726

- 주: 1. 기준시점(연말) 당시 영리기업
 2. 기업 단위로 작성되어 사업체 단위 통계와는 상이함
 3. 물리적 사업장 없는 기업과 비활동 기업(매출액=0 & 유급종사자=0) 등도 포함하여 다른 기업 및 사업체 통계에 비해서 포괄범위가 넓음
 4.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재편·가공)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2023년)

(단위: 개)

구분	기업 수
100억원 미만	1,618
100억~500억원 미만	1,126
500억원~1,000억원 미만	701
1,000억원~2,000억원 미만	1,071
2,000억원~3,000억원 미만	542
3,000억원~4,000억원 미만	261
4,000억원~5,000억원 미만	136
5,000억원~1조원 미만	265
1조원 이상	148
합계	5,868

- 주: 1. 표본조사로 이루어져 가중치 적용함으로 합계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기본통계」